

##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[장인수 의원 대표발의]

#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22.0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.
-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라.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
마.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).

바. 오산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오산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
### **3. 조례안 : 붙임**

### **4. 의견제출**

-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#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#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626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의의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  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22.0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.
-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라.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마.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).
- 바. 오산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오산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
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##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소속 공무원”이란 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
2. “후생복지제도”란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·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.
3.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② 오산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육아·질병·가사 휴직자를 제외한 휴직자
2.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
3. 그 밖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람

③ 의장은 오산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**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**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복지점수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.

**제6조(기본항목)**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.

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·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.

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.

**제7조(자율항목)**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·자기계발·여가활용·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.

**제8조(복지점수의 사용한도)**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,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**제9조(복지점수의 부여기준)**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,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.

1. 기본복지점수 :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

2. 변동복지점수 :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

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,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.

**제10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**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.

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.

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·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.

④ 전직·직위해제·면직·해임·파면·휴직·파견(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)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.

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**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, 건강증진시설, 휴양시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2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**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
2.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
3. 의정발전유공·친절·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·외 산업시찰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
  - 가. 소속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속한 사람. 단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
  - 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에 따른 해당 명예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사람
5. 자원봉사활동·문화탐방·공동체 훈련·체육행사 지원
6. 직장동호회 활동지원
7. 해외연수 지원
8. 직장어린이집 지원

9.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
10. 소속 공무원의 생일, 결혼,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
11.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
12.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13조(후생복지운영협의회)**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협의회는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을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.

1. 소속 공무원
2. 지역의 행정·경제·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

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협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
**제14조(운영의 위탁)**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5조(회계처리의 특례)**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,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

**제16조(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·운영)**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



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7조(오산시장과 통합 운영)** 의장은 오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**[별첨]**

# **관계법령 발췌서**

**「지방자치법」** 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, 전부개정]

**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**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**「지방공무원법」** 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8472호, 2021.10.8., 일부개정]

**제6조(임용권자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회의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,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임용권자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